**단칙**

(2014.07.19. 정기 총회 의결)

**전문**

본 단은 모든 KAIST 인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을 갖고 모두 하나 되어 자발적, 적극적으로 학교를 응원하는 우리만의 순수하고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응원의 연구 개발과 응원교육에 힘쓰며 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데 온 힘을 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은 KAIST 응원단 ELKA라 칭한다. (이하 본 단)

제2조 (위치)

본 단은 KAIST 내에 둔다.

제3조 (활동)

본 단은 전문에 밝힌 목적과 응원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1항. 본교 운동부의 대내외 경기 시 응원.

제2항. 본교생들을 위한 응원교육.

제3항. 응원의 연구 개발을 통한 응원 시범.

제4항. 타 대학 응원단과의 응원 교류를 통한 유대감 강화.

제5항. 응원의 올바른 인식과 본교 응원단의 홍보.

제6항. 단원들의 기량연마와 경험축적을 위한 대내외적 행사, 교육 참여.

제7항.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총회와 매주 3회 이상의 훈련 시행.

제8항. 기타 본 단의 목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전개.

**제2장 단원**

제4조 (자격)

본 단의 단원은 재학생, 휴학생을 포함하는 본교 학사과정에 있는 자로 한한다.

제1항. 본 단의 단원 자격은 전문에 밝힌 내용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본 단이 요구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항. 본 단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상을 갖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 (단원의 구분)

본 단의 단원은 준단원, 정단원, 자문위원으로 한다. 단, 단원인 자가 본교 학사과정에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고문단에 속하게 된다.

제1항. 준단원은 수습기간에 있는 활동 중인 단원을 말한다.

제2항. 정단원은 수습기간을 마친 활동 중인 단원을 말하며,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자문위원은 본 단의 단원으로 정단원 임기를 마친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한다.

제4항. 고문단은 정단원 임기를 마친 자 중 졸업,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본교 학사과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하며, 단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 (단원의 의무와 권리)

본 단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1항. 본 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 중인 단원은 타 단원 및 고문단과 이성 교제 금지.

제2항. 본 단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3항. 본 단의 단칙 및 결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제4항. 집회 및 총회에서 안건의 건의, 소청 및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제7조 (구성)

산하조직인 준단원, 정단원, 임원단, 자문위원을 둔다.

**제3장 임원단**

제8조 (구성)

임원단은 단장(1인), 부단장,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9조 (단장)

제1항. (자격) 본 단의 단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4학기 이상 활동 중이며,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에 충실하며, 지휘, 통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항. (의무) 단장은 본 단의 독립성 유지 및 단실을 보존하고 본 단의 지속가능성과 단칙 수호, 단원의 관리 및 본 단의 모든 활동을 총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지위 및 역할)

1. 대외적으로 본 단을 대표한다.

2. 모든 집회의 회장이 된다.

3. 본 단의 모든 활동을 통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모든 단원을 지도, 교육한다.

제4항. (권한) 단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소집 요구권.

2. 자문 목적의 집회 소집 요구권.

3. 각 부 부장 임명권.

4. 각 부 활동 승인권.

5. 상 벌안 발의권.

6. 기타 안건에 관한 집회 소집 요구권.

제5항. (임기) 단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차기 단장 임명일로 하며 연임, 재임이 가능하다.

제6항. (위임) 단장은 선출 이후 임명식을 통해 위임된다.

제10조 (부단장)

제1항. (자격) 본 단원을 활동한 자로서 4학기 이상 활동 중이며,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에 충실하며, 지휘, 통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항. (의무)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부재 시 단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지위 및 역할) 단내의 모든 규율과 각 부 부장 활동을 총괄한다. 총회 속기록과 회계 장부를 포함하는 모든 단내 기록물의 제작, 관리 책임을 진다.

제4항. (임기) 부단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당대 단장 퇴임일로 하며 연임, 재임이 가능하다.

제5항. (위임) 부단장은 선출 이후 임명식을 통해 위임된다.

제11조 (부장)

제1항. (자격) 본 단의 단원으로 2학기 이상을 활동 중이며,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에 충실하며, 지휘, 통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의무)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며, 해당 부서가 담당하는 모든 활동 및 행사의 계획, 실행 및 총회에서의 보고를 수행한다.

제3항. (지위 및 역할) 본 단의 해당 부서가 담당하는 모든 활동 및 행사를 주관한다.

제4항. (임기) 부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당대 단장 퇴임일로 하며 연임, 재임이 가능하다.

제5항. (위임) 부장은 임명 이후 단장에 의해 임명식에서 위임된다.

**제4장 자문위원**

제12조 (자격)

본 단의 단원으로 정단원 임기를 마친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한다.

제13조 (명예 자문위원)

단장이 고문단의 자문위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통해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해당 단장의 임기 이내로 한한다.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고문단은 자문위원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지만, 단원에는 속하지 않는다.

제14조 (권한)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항. 본 단의 제반 행사 의결에 대한 동의권.

제2항. 임시총회 및 총회 소집 요구권.

제3항. 각 부 부서의 활동계획 심의권.

제4항. 단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권.

제5항. 본 단의 단장과 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제6항. 재정 감사 및 사무 감사권.

제15조 (의무)

자문위원은 본 단의 훈련을 제외한 모든 공식 행사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때 단장의 권한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16조 (지위 및 역할)

자문위원은 본 단의 질서 및 발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장과 단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제5장 고문단**

제17조 (자격)

본 단의 고문단은 정단원 임기를 마친 자 중 본교 학사과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한다.

제18조 (지위 및 역할)

고문단은 본 단의 질서 및 발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장과 단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제6장 훈련**

제19조 (훈련)

본 단의 임원단은 단원들의 기량연마를 위해 정기훈련을 진행한다.

제1항. (구성) 본 단의 활동 중인 단원들로 구성된다.

제2항. (구분) 정기훈련, 임시훈련, 합숙훈련으로 나뉜다.

제3항. (의무) 본 단의 활동 중인 단원은 본 단의 모든 훈련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제4항. (주관) 각 훈련은 훈련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과 훈련부장의 허가 하에 정단원 이상 단원이 대신 주관할 수 있다.

제20조 (정기훈련)

학기 중에는 주 3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임시훈련)

행사를 앞둔 기간에는 추가 훈련 일정을 편성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합숙훈련)

방학 중에는 하계 2개월, 동계 2개월 동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총회**

제23조 (총회)

제1항. (구성) 본 단의 모든 단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구분)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뉜다.

제3항. (의무) 본 단의 모든 단원은 본 단의 모든 총회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제4항. (주관) 각 총회는 단장이 주관하며, 단장 부재 시 부단장 및 각 부장이 대신 주관할 수 있다.

제5항. (의결) 본 단의 모든 총회에서의 의결 안건은 전체 단원 수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단원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의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기록) 각 총회의 속기록 제작은 부단장이 주관하며, 총회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기록물을 기준으로 녹취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한다.

제24조 (정기총회)

제1항. (권한) 본회는 재정 예·결산 보고, 대내외 활동 및 계획 보고, 단칙 개정안 및 본 단의 모든 제반 문제에 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

제2항. (소집) 본회는 연 2회에 걸쳐 동계와 하계에 개최된다.

제25조 (임시총회)

제1항. (권한) 본회는 정기총회 안건에 따르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개최한다.

제2항. (소집) 본회는 단장의 요구 또는 단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의 심의를 거쳐 개최된다.

**제8장 탄핵 및 자격상실**

제26조 (탄핵)

본 단의 임원단은 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탄핵될 수 있다.

제27조 (자격상실)

탄핵을 받은 단원은 해당 지위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28조 (상)

본 단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본 단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는 단장이 발의하여 총회에서 지명 시상한다.

제29조 (징계)

다음과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1항. 본 단의 취지와는 다른 목적이나 이념을 가지고 가입한 자.

제2항. 본 단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본 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3항. 본 단의 대내외적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자.

제4항. 단칙을 위반한 자.

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계속해서 무단결석하거나 훈련 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자.

제6항. 본 단의 공식 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무단결석한 자.

제30조 (자격정지)

단칙에 의한 근신이나 정학 등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동 안 단원 자격이 임시 상실된다.

**제9장 재정**

제31조 (재원)

본 단의 재원은 학교 지원금, 단원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2조 (감사)

본 단의 재정 감사는 정단원, 자문위원의 요구에 의해 실시한다. 정기 총회에서 해당 기간의 예산, 결산, 감사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한다.

**제10장 임명**

제33조 (권한) \*2017.07.15 개정

본 단의 모든 직위의 임명, 해제 권한은 현 단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  
\* 위원회 운영 원칙

제 1 항 단장단 선출 과정은 당해 하계 정기 총회에서 대략적 계획(일정 등)이 논의된다.

제 2 항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활동 단원 후보들이 직접 한다. (위원을 지명한다) 제 3 항 차기 단장단 지원자는 제2항의 자격이 박탈된다.

제 4 항 현 단장단은 위원회의 기본 구성원이다.

제 5 항 고문단의 참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6 항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한다.

제35조 (선출)

제1항. (단장단)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며, 당대 단장이 선출위원장을 겸한다.

제2항. (부장) 당대 단장단, 부장단으로 임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며, 차기 단장이 임명위원장을 겸한다.

제3항. (준단원) 정단원 전원, 전대 단장단, 선발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다수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며, 전대 단장이 선발위원장을 겸한다.

제4항. (보궐선출) 직위가 공석이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궐선출을 시행한다. 단, 준단원의 경우 총회의 동의를 거쳐 선발 인원을 결정한 후 선발 절차를 시행한다.

제36조 (시기)

임원단 임명은 매년 가을학기 임명식 전에, 준단원 선출은 매년 봄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4.07.19. 정기 총회 의결)

제1조 (관례)

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와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2조 (유권해석)

본 단칙은 단장에 의해 유권해석 될 수 있다.

제3조 (효력발생)

본 단칙은 공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저작권)

본 단칙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본 단에 귀속되며, 따라서 공표권,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저작권은 단장의 허가를 거쳐 행사되어야 한다.

제5조 (단외공개)

본 단칙을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단장의 허가를 거쳐 의결일 위에 단장의 서명을 받은 출력물의 형태로만 전달해야 한다.